

	<h2>강사임용심사위원회 규정</h2>	문서번호	5-1-44		
		제정일	2020. 11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강사 신규임용 심사
2. 강사의 재임용 심사
3.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5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